

01 2023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 공모 한 눈에 보기

구분	1차	2차
지원사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사업 · 소극장(소공연장) 지원사업 ·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 ·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 ·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사업 ·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기간	2022. 12. 29.(목) ~ 2023. 1. 25.(수) / 28일간	2023년 2~3월(예정) ※ 각 사업별 공모 일정 상이할 수 있음
신청접수	2023. 1. 9.(월) ~ 1. 25.(수) / 17일간 오후 5시 59분 마감	2023년 2~3월(예정) ※ 각 사업별 공모 일정 상이할 수 있음
심의	2023년 2월 중	2023년 3~4월(예정)
결과발표	2023년 2월 중	2023년 4월(예정)
접수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www.ncas.or.kr)	

-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2년 연속지원사업(2022년~2023년)으로 올해는 공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2024년 공모진행 예정).
- ※ 지원신청 마감일에 임박해서는 많은 지원 신청이 동시에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니, 가급적 2~3일 전에 신청바랍니다.
- ※ 담당자 근무시간은 월~금(09:00~18:00 / 점심시간 12:00~ 13:00 제외)이며 해당시간 외에는 응대가 어려우므로 유의바랍니다.

02 2023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개편사항

<p>지원예산 상향조정</p>	<p>※ 문화예술창작-육성, 창작집발간 / 청년예술창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시각, 공연, 다원 장르 전년 대비 1백만원 증액 <p>※ 문화예술창작-심화, 문예지발간 / 문화예술기반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선정 지원금액이 지원 신청 시 제시한 예산금액 보다 감액되어 지원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함 - 지원신청 시 현실적인 예산계획을 할 수 있도록 평균 지원금액을 명시함(P6 참고)
<p>지원신청 불가자격 확 대</p>	<p>(기존 신청불가자격 내용에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성폭력이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재단 내부 의결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사업종료 후에라도 관련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비 전액환수 및 향후 5년간 지원사업 배제
<p>지원서 작성방법 일 원 화</p>	<p>(기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과 지원서 한글파일에 나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업목적, 세부내용, 지원예산 등 · 지원서 한글파일: 참여인력, 사업내용, 서약서 등 <p>(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서 한글파일로만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서 한글파일: 사업목적, 지원예산, 참여인력, 서약서 등 <p>※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성할 부분은 최소화(신청개요만 작성)하고 [첨부파일]에 지원서 한글파일을 첨부하여 지원함</p>

03 공통 안내사항

<p>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 (NCAS)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행정업무 시스템입니다. - 지원신청→지원금교부→정산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진행됩니다.
<p>심의 관련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지원사업 신청 시, 제공된 신청서 양식을 준수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정 양식에 준하여 작성되지 않거나 양식의 기록내용 및 규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필수 제출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심의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심의는 행정심의와 전문가 심의(서류)로 진행되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온라인 심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심의 대상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블라인드 심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p>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법 시행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 보장법」) 제정(2021.8.31.)에 따라 2022년 하반기부터는 해당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해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고 있는 현업 예술가와 예비예술인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2023년 지원사업 신청자 및 단체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준수를 위해 청렴이행 서약서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를 필수 제출해야 하며, 관련 사안이 발생한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예술활동 관련 불공정행위(「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 불공정행위의 금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절한 수익분배를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p>향후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라 선정자에게 별도의 추가 안내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 법정 보험제도 안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로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예술인 및 사업자의 고용보험료 책정과 신고·납부는 필수입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적용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근로자가 아니면서, ②「예술인 복지법」 제2조의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③「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제4호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하고 ④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과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납부를 위해 예술인 및 단체는 사업 실행 과정 내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선정된 사업의 지원금 교부 신청 시에는 주요 참여자의 서면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사업 내에서 발생하는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예술인 부담금을 비롯해 사업자 부담금 또한 지원금 내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 공연분야를 중심으로 안전상 위험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참여자는 지원금 내에서 상해보험료 자율 편성을 권장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지원자 책임신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 시 예술인(단체)이 전문예술인으로서의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로서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은 예술인(단체)의 지원 신청 내용을 신뢰하고, 이를 기반으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부정확한 정보와 자료의 제출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4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사업개요

◎ 기본사항

- 사업목적 : 전라북도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및 예술인의 성장 도모를 위한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
- 사업기간 : 2023. 1~12월
- 지원방법 : 공모선정
- 예산액 : 1,650백만원
- 지원규모 : 최소 3백만원 ~ 최대 11백만원
- 지원자격 : 전라북도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 지원내용 :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시행
 - [문화예술창작] 기초예술 창작활동 및 발표 지원
 - 육성(시각/공연/다원), 심화(시각/공연/다원), 창작집발간, 문예지발간
 - [문화예술기반구축] 예술인 발굴·육성·연구활동을 위한 문화예술 기반 구축 지원(문학/시각/공연/다원)
 - [청년예술창작] 청년 문화예술창작 활동 및 발표 지원(문학/시각/공연/다원)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지원신청
- 공고기간 : 2022. 12. 29.(목) ~ 2023. 1. 25.(수) / 28일간
- 접수기간 : 2023. 1. 9.(월) ~ 1. 25.(수) 오후 5시 59분 마감 / 17일간

◎ 공모구성

※ 신청자격과 지원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분야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바랍니다.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장르	지원규모
문화예술창작	육성	· 예술인으로 활동 중이며, 작업세계 형성과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성장하는 범위 · 최근(2020~2022) 3년 이내 1회 이상 활동경력 증빙 · 정기연주회 발표회 개인전 및 중소규모 전시 및 공연 등	시각, 공연 다원	①시각예술 : 4백만원 ②공연예술 : 5백만원 ③다원예술 : 5백만원
	심화	· 예술인으로 활동 중이며, 예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여 예술계와 향유자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범위 · 최근(2018~2022) 5년 이내 5회 이상 활동경력 증빙 · 대규모 전시 및 공연	시각, 공연 다원	평균 7백만원 내외 (최소 6백만원~ 최대 8백만원)
	창작집 발간 (개인)	· 최근(2020~2022) 3년 이내 1회 이상 활동경력 증빙 · 시, 소설, 수필, 희곡 등 창작집 발간 지원	문학	3백만원
	문예지 발간 (단체)	· 최근(2020~2022) 3년 이내 3회 이상 발간한 문예지 · 협회지, 동인지, 문예지 발간 지원	문학	평균 4백만원 내외 (최소 3백만원~ 최대 8백만원)
문화예술 기반구축	· 예술계의 발전을 위해 예술인을 발굴육성 하거나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문화 예술 기반을 구축하는 범위 · 최근(2018~2022) 5년 이내 3회 이상 활동 경력 증빙 · 공모전, 경연대회, 예술제 등 문화예술가 발굴·육성사업 · 강연, 평론, 세미나, 학술대회, 아카데미 등 연구 프로그램	문학, 시각, 공연 다원	평균 9백만원 내외 (최소 7백만원~ 최대 1천1백만원)	
청년예술창작 ※전체 예산의 10% 의무배정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하 예술인 및 단체 · 단체의 경우 사업 참여자 전원 청년 예술가로 구성 (1984. 1. 1. 출생자부터 해당, 주민등록등본 기준) · 시, 수필, 소설 등 발간 전시회 연주회 발표회 등	문학, 시각, 공연 다원	①문학 : 3백만원 ②시각예술 : 4백만원 ③공연예술 : 5백만원 ④다원예술 : 5백만원	

◎ 지원사업 장르 및 지원형태

장르		세부장르	지원형태
문학예술		○ 시 ○ 시조 ○ 소설 ○ 희곡 ○ 아동문학 ○ 수필 ○ 평론 ○ 스토리텔링 ○ 드라마·시나리오 등	발간
시각예술		○ 한국화 ○ 서양화 ○ 판화 ○ 조소 ○ 공예 ○ 서예 ○ 사진 ○ 디자인 ○ 설치·영상매체 등	전시
공연예술	음악	○ 오페라 ○ 관현악 ○ 실내악 ○ 성악 ○ 작곡	공연
	무용	○ 한국무용(전통, 창작) ○ 현대무용 ○ 발레	
	연극	○ 연극 일반 ○ 마임 ○ 뮤지컬 ○ 인형극 ○ 아동극	
	전통예술	○ 정악(시조, 가사, 가곡) ○ 판소리 ○ 창극 ○ 풍물·사물놀이 ○ 민속·의례 등	
다원예술		○ 장르복합예술 ○ 독립·실험·탈장르예술 등	발간·전시·공연

※ 전 분야 온라인 예술활동(e-book, 온라인전시 및 공연) 형태 허용

◎ 문화예술활동 과거 경력증빙 자료

※ 필수제출사항이므로 '지원신청서' 양식에 기재바랍니다.

분야	장르	증빙자료
문화예술창작	시각예술	포스터, 도록, 리플릿, 전시사진, 언론매체 기사 등 전시일자, 전시명, 신청자명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공연·다원예술	포스터 프로그램 리플릿 행사사진 언론매체 기사 등 공연 및 행사일자, 공연명, 신청자명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창작집발간	시 소설 수필 희곡 등 창작집 표지 발행정보면 목차 또는 문예지 작품수록면 등 신청자 명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문예지발간	협회지 동인지 문예지 등의 표지, 발행정보면, 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등 신청자 명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문화예술기반구축	전장르	포스터, 리플릿, 행사사진, 언론매체 기사 등 예술인 발굴·육성 활동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세미나, 포럼, 학술대회 결과물 표지, 포스터, 리플릿 행사사진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청년예술창작	전장르	포스터, 리플릿, 도록, 행사사진, 언론매체 기사 등 신청자명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05 지원기준

1. 지원신청 자격

- 개인 주소지 및 단체 소재지 전라북도 지역 제한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공고일 기준 발급일자가 최근 1년 이내)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중 최소 1종 필수 제출

<가산점 적용 사항> ※ 증빙자료 제출 필수

- 2018~2022 재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및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없는 개인 단체(2.5점)
 -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소극장(소공연장)지원사업,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사업
 - 전라북도 군 단위(8개 지역)* 가산점 부여(2.5점)
 - *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문화예술활동 가산점 부여(2.5점) ※ 장애인증명서 첨부필수
- ※ 단, 가산점의 최대 합계 5점까지 인정

2. 지원신청 불가능한 개인 및 단체

[개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2022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으로 지원 받은 대상자(휴식년제 적용)

[단체]

- 국공립(도·시·군립) 기관 및 지자체에서 운영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문화원, 문화의집, 민간위탁문화시설
- 학교, 학원, 교습소, 종교단체, 언론사 또는 그 소속 단체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휴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
- 주된 목적이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종교기관 및 종교기관에 소속되거나 연관된 단체

[공통]

- 지원총량제
 - 수행 기간 기준 2023년도 공모사업으로 동일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재단 문화 예술분야 공모사업 지원금액이 총 1억원 이상일 경우 제한
- 2020년 ~ 2022년 지원사업을 중도 포기한 개인 및 단체
 - ※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정해진 기간 이후에 포기하였더라도 지원가능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 환수법) 및 「보조금 운영관리
에 관한 법률」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개인·단체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으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단체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개인·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
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
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단,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성폭력이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재단 내부 의결을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사업종료 후이라도 관련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비 전액환수 및 향후 5년간 지원사업 배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개인·단체

3. 지원신청 불가한 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등의 국비, 도비 지원받는 사업
- 개인(단체) 지원의 경우 단체(개인)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은 지원 불가
- 단체의 신규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 및 용자 지원사업 등

4. 다중신청 및 선정 관련

- 다수 사업 선정 불가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7개 사업)* 1개 사업 이상 신청은 가능하나 다수 사업 선정 시 택 1
하여야 함
- 예) 홍길동 대표가 동일단체명(000)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과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공연장르에 다중
선정 되었을 경우 두 사업 중 1개만 택하여야 함.
-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소극장(소공연장)지원사업,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사업

5. 행정심의 결정사유

- 지원신청 자격 미해당
- 지원신청 불가능한 개인 및 단체
- 지원신청 불가한 사업
- 필수제출 서류(지원신청서 및 필수자료) 미제출
-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

6. 지원자 책임 신청제 운영

- 지원신청 시 예술인(단체)가 전문예술인으로서의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로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예술인(단체)의 지원 신청 내용을 신뢰하고, 이를 기반으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
- 부정확한 정보와 자료의 제출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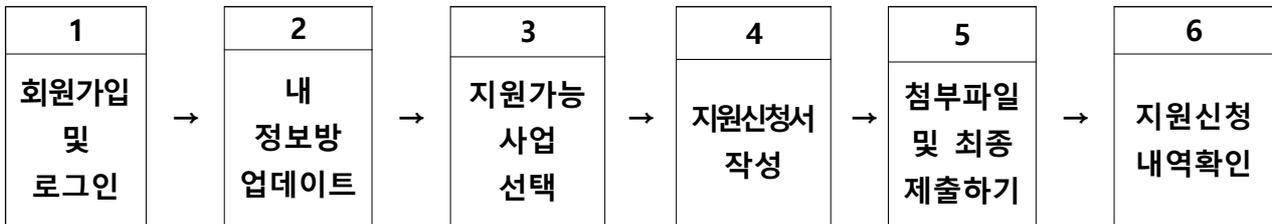
유의사항

- 자율적으로 자부담을 편성하는 것은 가능하나, 우대 등의 추가 혜택 없음
- 모든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을 준수하며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재단 회계정산 기준을 준용하여야 함
- 선정 이후 모든 활동은 관계 법령 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절차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으로 진행됨
-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필수 제출 서류(주민등록등본/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지원신청서, 청렴이행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동 동의서) 내용확인 및 동의 필수
- 사업 선정 이후 주요 사업내용 변경 불가하며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 변동이 심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특별한 사유 없이 포기 기간 이후 사업 포기 시 향후 3년간 사업 신청 제한됨)
- 회계, 정산교육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등 재단이 추진하는 교육에 필수 참석하여야 하며 교육에서 안내하는 지침 준수하여야 함
- 지원사업 수행 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있음
-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단체는 선정이 되더라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완료 시기까지 교부가 불가함

06 지원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1) 지원신청 방법 및 기간

-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으로 온라인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재단 직원의 시스템 지원신청 대행 불가)
- 기간 : 2023. 1. 9.(월) ~ 1. 25.(수) 17일간 오후 5시 59분 마감
- 지원신청 순서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회원가입 및 지원신청 절차는 붙임파일 매뉴얼을 참고 바랍니다.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용 관련 문의처 : 고객만족센터 1577-8751

(2)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 시 필수조건

구분	조건
개인	'개인'회원가입 후 지원신청 가능
단체	'단체 대표자(개인)' 회원가입 후 '단체' 회원가입 및 지원신청 가능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단체만 지원신청 가능 ※ 휴, 폐업 상태의 단체는 신청 불가

- >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지원신청해야함
- ※ 주의: 단체 사업 신청 시 단체 대표자명으로 신청하면 행정심사에서 결격처리 되므로 반드시 단체 명의로 로그인 후 신청해야 함

(3)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 마감일에 임박해서는 많은 지원 신청이 동시에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니, 가급적 2~3일 전에 신청바랍니다.
- 신청서 최종 제출 후 신청기간 마감 전까지는 신청서 회수 및 재작성이 가능합니다. 단, 마감 시간 이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 대표자 또는 실무자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내정보방]에서 반드시 정보를 변경하신 후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의 경우 필명 또는 예명으로 지원신청 불가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본명으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지원 신청 해야합니다.
- 단체인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단체명으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가입하여 지원 신청 해야합니다.(단체 약칭이나 줄임말로 신청 불가)
- 담당자 근무시간은 월~금(09:00~18:00 / 점심시간 12:00~ 13:00 제외)이며 해당시간 외에는 응대가 어려우므로 유의 바랍니다.

(4) 제출서류

1. 필수제출서류(지원신청서 서식)

- ⇒ '2023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공고문'에서 지원신청서 양식(한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신청 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면에 **한글파일로 첨부**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성할 부분은 최소화(신청개요만 작성)하고 [첨부파일]에 지원서 한글파일을 첨부하여 지원함**

필수 첨부해야 하는 내용

1. 지원신청서 제출확인서 및 동의서
2. 지원신청서
3. 첨부 1. (개인) 주민등록등본 사본(공고일 기준 발급일자가 최근 1년 이내)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4. 첨부 2. 장애인증명서 사본(해당되는 경우)
5. 첨부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동 동의서
6. 첨부 4. 청렴 이행 서약서
7. 첨부 5.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2. 장르별 지원신청서 서식

1. 문학장르

- 문화예술창작-창작집발간(개인) : [붙임2] (개인) 창작집발간 신청서
- 문화예술창작-문예지발간(단체) / 기반구축 / 청년예술창작 : [붙임3] 문학신청서

2. 시각장르

- 문화예술창작-육성·심화 / 기반구축 / 청년예술창작 : [붙임4] 시각예술신청서

3. 공연장르

- 문화예술창작-육성·심화 / 기반구축 / 청년예술창작 : [붙임5] 공연예술신청서

4. 다원장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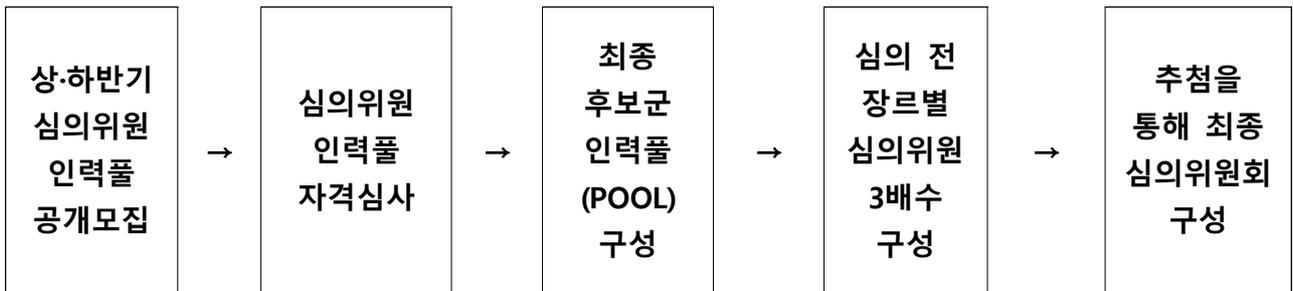
- 문화예술창작-육성·심화 / 기반구축 / 청년예술창작 : [붙임6] 다원예술신청서

07 지원심의 진행절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는 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 구성과 운영을 체계화 하고자 합니다.

- 문화예술 전문기관 추천 및 공개 추천 방식을 통해 심의위원 인력풀(POOL)구성
- 장르별로 심의위원 후보군에서 3배수 구성 후 추첨을 통한 최종 심의위원회 구성
- 균형 잡힌 심의위원 구성을 위해 외부(타시도) 심의위원 비율 1/3 이상 구성
- 성평등 확립을 위한 최종 심의위원 3배수 후보군 구성 시 특정 성별 2/3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심의에 참여하는 모든 심의위원 대상으로 심의수칙 안내 및 공정심의 서약서 제출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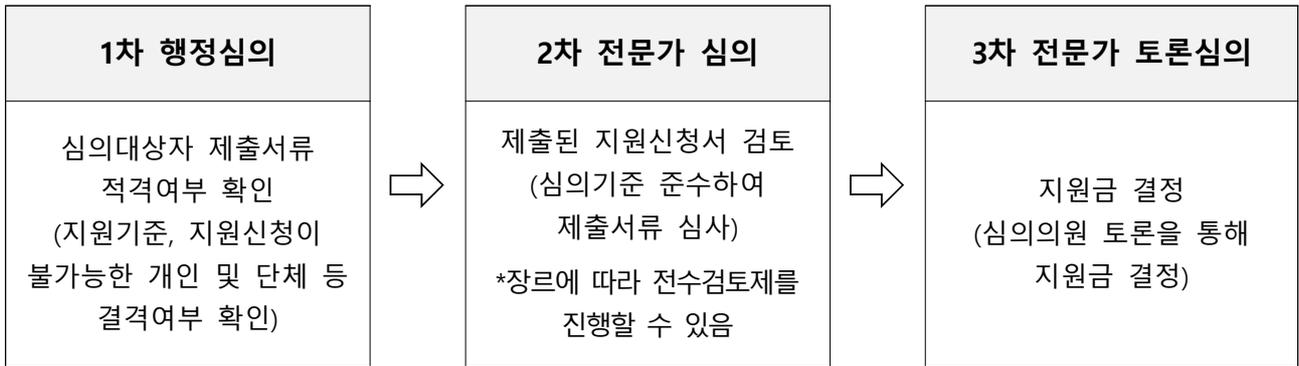
(1) 심의위원 구성 절차



※ 심의위원 자격

- 1호.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비평·연구·기획·교육·언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
- 2호. 문화일반·복지, 지역 문화, 국제 교류, 문화정책, 예술경영·행정, 문화예술교육, 문화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
- 3호.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 4호.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 5호.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사

(2) 지원신청 심의절차



※ 전수검토제 : 지원서류를 심사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

○ 행정심의 내용

구분	대상 및 세부내용	점수
가산점 적용사항	전라북도 군단위 지역	+2.5 (최대 합계 5점까지 인정)
	신규(최초 지원)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결격 사유	지원신청 자격 미해당	심사배제
	지원신청 불가능한 개인 및 단체에 해당	
	지원신청 불가한 사업에 해당	
	필수제출서류(지원신청서 및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지정양식 미사용 등)	

○ 가산점 적용기준

가산점 항목	대 상
전라북도 군단위 지역 (2.5점)	전라북도 군 단위 8개 지역 소재지 개인 및 단체 (8개군: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신규(최초 지원) (2.5점)	2018~2022 재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및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없는 개인 단체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2.5점)	전라북도에서 활동하는 장애 예술인 및 장애인 예술단체 ※ 장애인증명서 필수 첨부

※ 단, 가산점의 최대 합계 5점까지 인정(가산점 적용한 심의 최종점수가 10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문가 심의 장르별 심의기준

장르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문학 기반구축	예술적 우수성 (30%)	- 사업의 예술적 우수성은 탁월한가? - 사업의 질적 수준이 뛰어난가?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30%)	-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은 적절한가? - 지원신청금액이 타당하고 확보 가능성이 있는가? - 예산편성이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되었는가?
	신청자(단체)의 실행역량 (20%)	- 신청주체가 전문성과 예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 사업실적 및 경력은 우수한가?
	해당분야 발전 기여도와 파급효과 (20%)	-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 - 도민 문화 향유 증진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는가?
문학 (창작집) *블라인드 심사	작품의 예술적 우수성 (50%)	- 제출한 원고가 우수한가? - 창작집에 수록될 작품의 예술성은 높은가?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30%)	- 지원사업이 목적하는 바와 창작집 발간 계획이 부합하는가? -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은 적절한가?
	해당분야 발전 기대성과 기여도(20%)	- 사업을 통해 신청인의 활동분야에서 발전이 기대되는가? - 지역문학예술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
문학 (문예지)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40%)	- 지원사업이 목적하는 바와 문예지 발간 계획이 부합하는가? -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은 적절한가? - 지원신청금액이 타당하고 확보 가능성이 있는가? - 예산편성이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되었는가?
	신청자(단체)의 실행역량 (40%)	- 신청주체가 전문성과 예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 사업실적 및 경력은 우수한가?
	해당분야 발전 기여도와 파급효과 (20%)	- 지역문학예술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
청년예술 창작	성장가능성(30%)	- 신청주체가 해당분야의 전문예술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가?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70%)	-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은 적절한가? - 지원신청금액이 타당하고 확보 가능성이 있는가? - 예산편성이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되었는가?

※ 문학(창작집) 분야는 전문가 심의 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한 후 제출된 작품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08 보조금 예산 편성 항목

(1) 보조금 집행이 가능한 직접 경비

세목	항목	용도	비고
일반수용비	사례비	- 스텝, 단기스텝, 단기 보조아르바이트, 작업보조자 등 - 출연료, 평론, 자문 등 - 대표자 사례비 : 사업에서 맡은 역할이 있을 경우 총 사업비의 10% 이내 편성 가능	사업자등록 업체 거래필수, 개인거래 불가
	발간비	도록, 서적 발간	
	홍보 및 마케팅	인쇄물, 홍보물, 광고비 등(현수막, 리플릿, 포스터 등)	
	재료비	작품 제작에 필요한 (소모성)재료 구입비	
	수선비	무대, 세트 의상, 소품 등의 수선비	
임차료	제작비	무대, 세트, 전시장 조성 등 제작에 소요되는 각종 제작비(영상, 음악, 무대, 소품, 의상, 액자, 악보 등)	사업자등록 업체 거래필수, 개인거래 불가
	대관료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부대시설 등 대관료	
복리후생비	임차료	· 의상 및 소품(대소도구, 악기) 대여비 등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임차료 · 출연진 이동 버스, 용달비 등 차량 임차료	사업자등록 업체 거래필수, 개인거래 불가
	복리후생비	· 예술인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기타운영비	기타운영비	·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기타비용(운송비 등)	

(2) 보조금으로 집행 할 수 없는 경비

사용불가 항목	용도
개인, 단체의 일상적 운영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전화요금 등 일상 운영경비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 회의비(식비, 다과비), 주류(사용 시 환수조치) - 상금, 상금 심사비 등
자산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종료 후에도 자본적 성격으로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한 경비 예) 노트북, 모니터, 프로젝터, 그래픽카드, 음향 장비 등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산성 물품은 지원금 인정이 가능함 ①개별 가격 10만원 미만의 소모성 물품 ②공연·작품·전시에 직접 사용된 물품비 - 해당 물품은 재료비로 간주하며,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 정산 시 해당 물품을 사용하였다는 추가 사진증빙을 요청할 수 있음. (예시) 공연의상, 공연장·전시장 내 좌대 및 직접 필요한 재료 및 소모품 (캔버스, 물감, 액자 등)
행사 답사비 등 비용	<p>교통비(항공권 포함), 숙박비, 유류대 등</p> <p>※ 작품 운송과 관련된 운송 비용 인정(거래명세서 필요)</p>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경우 보조금 수령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는 편성 불가 - 보조금 수령자(단체대표자)가 거래업체 대표와 동일인일 경우 거래불가 - 업무추진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 수수료 불가(문자서비스, 공동인증서 발급, 이체 수수료 등) - 세금/고용보험료 납부 시 발생한 가산세, 과태료 -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부가가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을 수령받는 단체가 과세사업자일 경우 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 사용 불가

※ 부가가치세 환급금 관련 향후 선정된 단체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일 경우, 지원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반납 또는 자체자금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문의

구분	내용	연락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고객만족센터	온라인 지원시스템 (회원가입, 지원신청 등)	1577-8751	평일 10:00~11:30 14:00~17:00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문예진흥팀	공연예술	(063)230-7441	
	문학·다원	(063)230-7443	
	시각예술	(063)230-7444	
	공통	(063)230-7441~4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에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화연결 종료, 출입제한)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